



광 주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15누74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 주식회사 [REDACTED]
피고, 피항소인 [REDACTED]시장
제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5. 11. 12. 선고 2015구합10155 판결
변 론 종 결 2016. 5. 12.
판 결 선 고 2016. 5. 26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3. 5. 16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5,204,113,810원의 부과처분 중 5,119,463,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6-28

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'87.973,500,000원'을 '87,973,500,000원'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창한

판사 김호석

판사 김성준